

정책연구 2011-20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기초 예시사무에 관한 연구

2011
Global Leader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김 필 두 (연구위원)

임 정 빈 (성결대)

강 기 흥 (경상대)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사무구분에 관한 문제점 분석	7
제1절 지방자치법상 관련규정의 필요성	9
1. 현행제도의 개요	9
2.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관련 규정개정의 필요성 · 12	
제2절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현황과 문제점	24
1.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의 예시	24
2.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문제점	26
제3장 국가 및 지방사무의 역할 분담	29
제1절 국가 및 지방사무의 역할분담	31
1. 개관	31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단계	33
3. 사무의 집행단계	35

차 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절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36
1. 자치사무	36
2. 법정수탁사무	38
3. 자치단체별 자치사무	39
제3절 시사점	41
제4장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예시사무 개편방안 ..	43
제1절 현행·광역 기초간 사무배분 개관	45
1. 법 규정	45
2. 광역·기초간 사무의 판정	46
제2절 현행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체계의 한계	47
1. 직접관련 규정의 무용론	47
2. 개별법과의 불일치	49
3. 공통사무의 증가	50
4. 현지성과 통합성의 부재	50
제3절 광역·기초 예시사무 개선방안	51
1. 기본방향	51
2.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52



표 차례

<표 2-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분	11
<표 2-2> 지방자치법상 ‘사무’ 용어의 불명확성	14
<표 2-3> 시·도와 시·군·구간의 중첩형 사무배분 사례	17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18
<표 2-5>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체계(법문표현상 근거)	21
<표 2-6> 사무 구분에 따른 경비부담의 원칙	23
<표 2-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5
<표 3-1> 일본의 새로운 사무구분 체계	31
<표 3-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기본 원칙	35
<표 4-1> 광역·기초간 사무구분을 위한 간접규정	46
<표 4-2> 특정사무에 대한 광역·기초간 관할권 판단 절차	47
<표 4-3> 제9조 2항 신·구 대조표	54
<표 4-4> 개정기준예시	59
<별표> 개정(안)	59
<별표> 개정(안)	72
<별표> 개정(안)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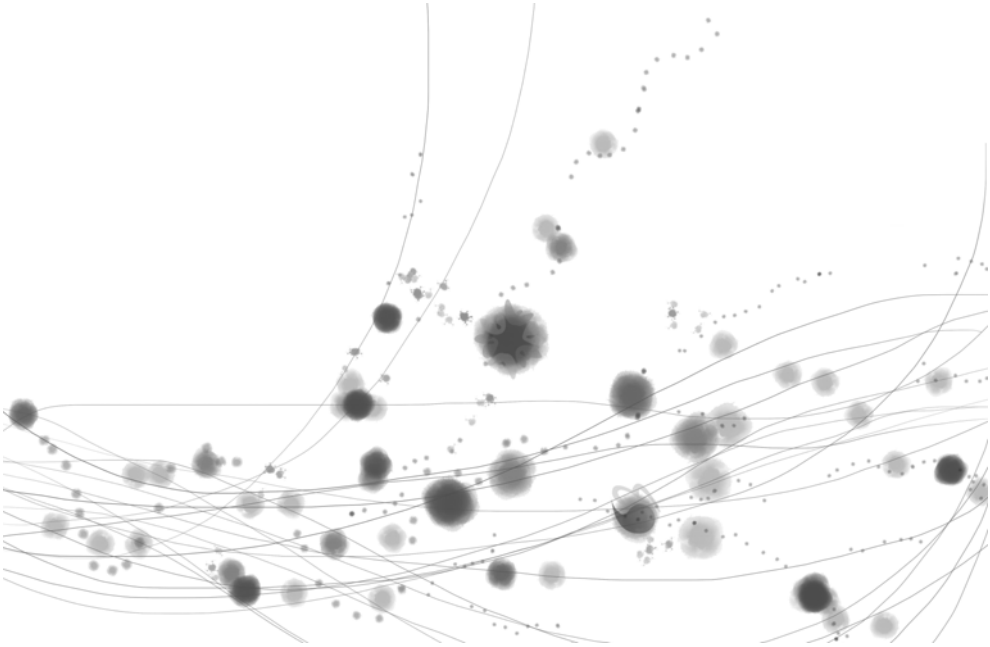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부기준	34
[그림 4-1] 제9조 2항 개정절차	53
[그림 4-2] <별표 1>의 개정절차	58
[그림 4-3] <별표 2>의 개정절차	72
[그림 4-4] <별표 3>의 개정절차	74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민선 단체장이 처음 출범한 이후 민선5기의 지방자치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정부는 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지방분권의 완성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명확한 사무배분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준과 원칙이 지방자치의 기준법인 지방자치법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정치계와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현실과는 동 떨어진 규정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이 개정(최근개정: '09.4.1)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예시사무, 사무명 등에 대해 최근 개정 사례 없음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사무범위와 예시사무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사무예시의 현행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기관위임사무 정비완료('11.8 월말 예정)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무범위와 사무예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재정립 필요
 - 현행의 기관위임사무 정비(자치사무, 법정수임사무, 국가 환원 또는 폐지)에 따라 이양확정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예시사무 포함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재정립하는 것임
- 그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함
 - 따라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와 예시사무, 사무명 등의 정비
- 국정과제인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기관위임사무의 정비결과 이양되거나 환원되는 사무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사무범위와 국가사무의 조사로 명확한 사무배분체계의 마련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사무범위 및 예시사무 등을 재조사, 현행 법령상 사무와 불일치 사례 해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 제9조), 종류별 사무(시행령 제 8조), 별표 1·2의 예시사무를 중점 대상으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사무범위 설정으로 권한과 책임범위의 명료화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구체적인 예시사무를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자율성 강화의 계기 마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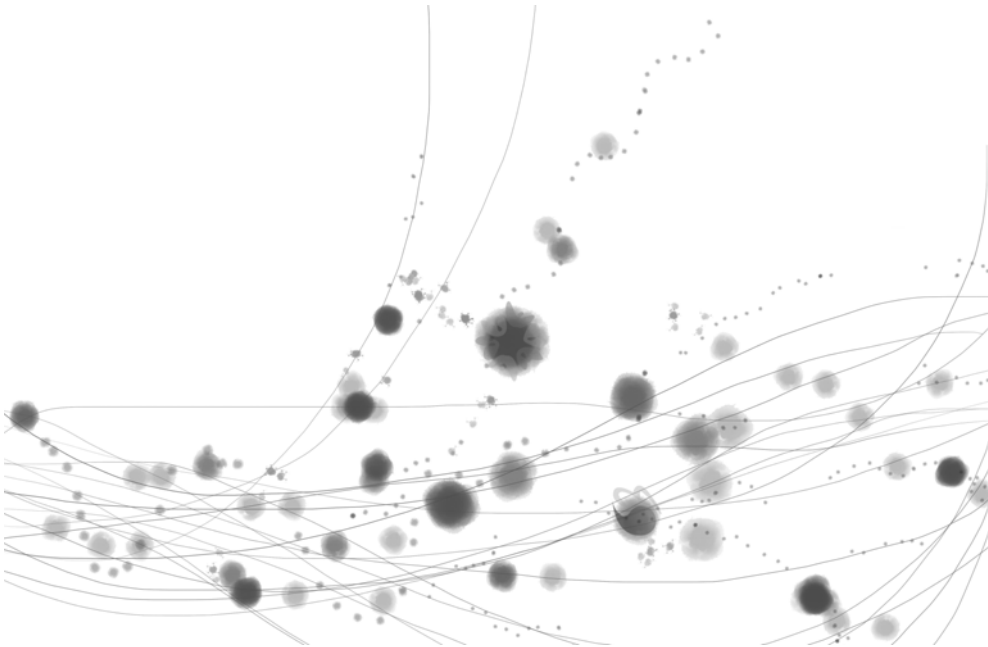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년도 기준
 - 대상적 범위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내용적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예시 사무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및 예시사무의 일정 정비
-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각종 기존논의의 검토, 각종 관련통계자료의 분석
 - 관계자 자문 : 관련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자문
 - 전문가 워크숍 : 관련 학자 및 연구원 워크숍

제 2 장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사무구분에 관한 문제점 분석

제1절 지방자치법상 관련규정의 필요성

제2절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현황과 문제점



제 2 장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사무
구분에 관한 문제점 분석

제1절 지방자치법상 관련규정의 필요성

1. 현행제도의 개요

1)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현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기함
- 오늘날의 국가는 복지국가, 직능국가, 봉사국가, 행정국가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국민과 주민의 거의 모든 생활을 보호·규제하고, 분배·급부하며, 중재·조정하고, 향상·촉진하고 있기 때문임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사무를 위임 받아서 그것도 처리하고 있음
- 오늘날과 같은 공공사무 확대의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며, 것처럼 많은 사무의 복잡한 내용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해서 어떻게 체계화 하느냐가 중대한 과제임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동조 2항에 예시된 자치사무는 다음과 같음
 -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사무
 -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2) 자치단체 사무구분

-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 ① 그 관할구역의 사무와 ②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예시하고 있음
-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고유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반면 그 지방의 공공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 비하여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 임
- 또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규정 없는 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유형화 하면 <표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2-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분

구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94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후단, 제2항, 제94조	지방자치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
내용	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 하에 당해 구역의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 (지방적 사무)	법령의 개별규정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었거나 소속된 사무 (지방적+국가적 사무)	법령 등에 의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 (국가적 사무)
재정	자체재원 (국가 보조 가능)	국가의 사업비 일부보조	전액 국비 부담
의회	지방의회의 통제대상	지방의회의 통제대상	통제대상의 원칙적 배제
감독	최소한의 국가감독	제한된 범위 내의 감독	강력한 국가 감독
배상	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자치단체 공동책임	국가책임

자료 : 안용식 외, 2006: 337

- 자치사무(고유사무)
-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적인 사무, 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여야 함
 -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합법성여부를 가리는 사후적 성격을 가진 소극적 감독에 한하고 있음
- 단체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는 직접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이해와 관계가 있고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임

-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 조세 등 공과금의 징수(지방세법, 조세징수법), 하천의 보수·유지 및 점용료·사용료 징수(하천법), 국도의 유자·수서 및 점용료의 징수(도로법), 생활보호사무(생활보호법) 등이 있음
- 기관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 중에서 법령이나 일반 통칙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 임
 - 우리나라의 기관위임사무는 호적사무, 주민등록사무, 병무,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경찰, 소방, 지적사무, 국세조사, 산업통계에 관한 사무, 기부금품 통제사무, 경제계획 및 통계사무, 농업개발, 상공진흥, 공유수면매립사무 등을 들 수 있음

2.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관련 규정개정의 필요성

-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무구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공공사무에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있으며 후자는 다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됨(지방자치법 제9조-제11조)
- 사무의 구분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량권의 범위, 국가 감독, 재정 부담의 책임자, 지방의회의 관여, 조례 제정 등 많은 내용적 차이가 사무의 종류 간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또한, 공공부문 주제간 사무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절하고 명확한 역할분담과 책임분담을 가능케 하여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해 오면서도 지금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수행 환경에 제대로 맞는 사무구분의 형식과 기준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임

1) 사무구분의 기준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실무계나 학계에서도 대부분 지방사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를 구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지방사무’의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자치사무 이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사무(국가사무)도 지방에서 처리하면 그것을 지방사무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사무를 ‘자치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제9조제2항),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의 규정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무처리가 제한되는 분야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를 <국가사무의 판단근거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 제11조에서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사무’라는 표현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독점적 사무수행 권한이 우선권을 갖는 ‘분야’ 또는 넓은 의미의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제시한 자치법상의 <국가사무의 기준>만으로는 하나의 사무를 국가사무인지 또는 지방사무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함
-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위임사무 존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무(자치사무) 수행체계를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화 시대에 더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표 2-2> 지방자치법상 ‘사무’ 용어의 불명확성

자치법상 ‘사무’의 명칭		실제사무
지방 사무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의(고유/위임)사무 (동법 제9조제2항, 예시된 사무의 종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단체위임사무(동법 제9조 제1항)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동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국가 사무	국가사무	동법 제11조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무처리가 제한되는 분야를 예시적으로 열거 (국가사무의 판단근거와 기준)

자료: 안영훈, 2009:153

2) 지방자치법상 사무에 관한 규정방식의 통일성 결여

- 사무구분에 있어 지방자치법상의 법문표현과 그 규정방식에 있어서 명확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나타나고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들의 중복적 상황)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OO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그 사무는 고유사무에 해당하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OO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이는 단체위임사무를 규정하는 것임
- 법률에서 「OO장관은 OO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또는 「OO을 하고자 하는 자는 O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후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함
- 그런데 실제 법령을 보면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입법례는 수없이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에만, 그것도 시군구·시도를 지칭하여 국가사무(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와 구별하여 규정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OO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해도, 이 규정만으로 그 사무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사무로서의 기관위임사무인지 확실히 구분하지 못함
- 왜냐하면 본 규정만 보면 이를 자치사무로 보겠으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와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장의 중복적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다른 법령 등의 예외 조항이 존재하고 또한 해석상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면서 단체위임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 자치사무라고 단정 지을 경우는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사무 분야에 속하는 경우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호에서 사무의 종류를 열거한 것이라든지 각 개별법령에서 사무처리 주체를 규정한 것만 가지고 어떠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그리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음
- 사무가 광역사무인지 기초사무인지는 일단 그 개별 법률의 사무수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됨
- 그 결과 실무적으로 조례제정대상 내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 국가가 기관위임사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각 개별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다툼이 일어날 소지를 갖고 있게 됨
-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바로 사무구분에 대한 법문표현이 모호하고 규정방식도 다양하여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임(이것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표현이 다양하게 규정된 것에도 기인함)

3)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의 불명확

- 지방자치법 제10조는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의 사무배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층 자치단체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지근거리에서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자치단체의 본질적 임무에 비추어 자치사무는 기초단체에 배분함이 원칙임(기초단체 우선배분의 원칙)
- 또한 광역단체의 사무 부여 기준을 위 조문 제1항 제1호 각목에 열거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초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열거된 사무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와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무구분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것은 자치단체 간에 권한다툼이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3> 시·도와 시·군·구간의 중첩형 사무배분 사례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농작물병충해방제계획 수립·조정 ●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 중소기업 이전실시계획의 작성 ● 문화예술진흥사업 경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농작물병충해방제계획 수립·조정 ●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 중소기업 이전실시계획의 작성 ● 문화예술진흥사업 경비 지원

자료: 안영훈, 2008: 279

- 또한 단위 사무를 한 자치계층에 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이를 분할해 동시에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배분하여 두 자치계층 간에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 1]에 제시된 시·도 사무에는 보건교육 지도 감독(2.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마의 2항)이, 시·군·자치구 사무에는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2. 주민복지 증진의 사무, 마의 4항)으로 배분된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함(정일섭, 2010:197)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법 나. 사회복지시설 다. 생활이 라. 노인·아동 마. 국민건강증진사업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1) 주민건강 증진 업무 세부 계획 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자료: 정일섭, 2010:197

- 또한 실무상으로 어떤 부처에서 새로운 자치사무를 신설할 때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초단체의 수가 워낙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임(이것은 기초단체의 통폐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함)

4) 자치단체의 특성무시

-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일괄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무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도에서 처리할 광역적 사무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도에 배분된 사무를 단지, 시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도에 배분된 사무 중 기초단체에 주어야 할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

- 또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의 특례가 법 제2조 제2항에 함축되어 있는데 자치권의 범위란 사무의 범위와 직결되기 때문임
- 자치구는 동일 생활권과 단일 공동체를 이루는 대도시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독자적 사무처리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 점에서 자치구는 불완전한 자치단체로 볼 수 있음(조정찬, 2010: 512-153)

5) 공동사무에 관한 기준 결여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하나의 사무를 기초와 광역 모두에게 배분하지 말 것을 규정하였음. 이는 사무처리에 있어 책임의 명확성 보장과 광역의 기초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소지 등을 고려한 것임
- 부득이 양자 모두에게 부여한 사무를 공동사무라고 하는데 공동사무는 극히 예외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양자의 권한과 책임 배분에 선을 그어 주어야 함
- 그러나 공동사무에 대한 명확한 실정법적 개념이 없음. 실무상 존재하고 있는 공동사무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인 개념정의가 없어 성질이 다양한 사무가 혼재하는 근거가 됨(조정찬, 2010)
- 공동사무의 주된 사례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의 이해를 갖는 사무(사회복지사무, 질병관리사무, 재난재해 관리사무 등), 지역적으로 또는 규모에 의해 함께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환경관리, 도시계획사무, 지역개발사무 등) 등이 있음. 그러나 공동(협력)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수행 방식이 다양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시설의 설치·관리나 사업의 시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사무와 서비스의 이익이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만

한정되지 않거나, 인접 자치단체간 규모의 경제가 기대되는 것인 때에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협력 사무로써 수행이 가능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가 실무적으로 존재해 있고 또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사무배분체계 및 이행방식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화가 결여되어 있고(조합제도의 제도적 미비상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약에 근거한 사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방식에 의한 사무처리’제도(협약제도 또는 사무수행에 관한 행정계약제도) 등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임(안영훈, 2008)

6)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 사무배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①에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의 배분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기능 배분은 제10조 ②에서 “제1항의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배분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있음

7)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의 모호성

- 우리나라에서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자치사무’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자율적 재정부담 하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

기의 책임과 자율적 재정부담 하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가 그것임

- 이를 세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에 속하는 사무,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포괄적 의미의 사무, 법령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주로 주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사무(“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후단) 등을 말함
- 헌법상 자치사무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주로 주민의 공공복리(토목사업·도시계획·위생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구역 내에 한정된 사무를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사무가 실제로 그 성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는 여전히 확정할 수 없음(안영훈, 2009: 153)

<표 2-5>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체계(법문표현상 근거)

사무구분	현행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근거
국가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상 국가가 처리하는 사무 • 국가사무의 예시: 외교, 국방, 사법, 국제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 각호)
자치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전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동법 제103조 전단, 제 166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동법 제151조 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동법 제171조)
위임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기도의) 사무(동법 제41조 제3항) •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동법 제103조 후단) • 위임된 사무(동법 제141조)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동법 제 167조)
위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지방자치법 제 151조 후단)

자료: 안영훈, 2009: 154

8) 기관위임사무로 인한 자치권의 제약

- 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국가사무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상호간에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위임사무의 존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
- 기관위임사무는 보통 법률에서 위임 가능한 대상사무와 수입기관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사무를 특정하고 수입기관을 정하는 방법으로 위임을 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과거 지방자치가 명목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당시 새로운 행정사무가 대거 신설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결과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대부분은 기관위임사무로서 자치단체는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인상이 지워져 지방자치의 이념을 더욱 약화시켰음
- 기관위임사무가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과중한 하중에 놀려 그 존립목적과 직결된 고유사무의 처리가 날로 위축됨으로써 중대한 장애요인이 발생하게 됨(유봉영, 1991: 288)
-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기관위임사무가 자치단체 전체사무의 7할을 차지하는 현상을 빚대어 "3할 자치"라고 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면 민간위탁의 경우처럼 자치단체의 동의하에서만 위임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일본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였는데, 다만 반드시 수탁 받아야 할 사무는 이른바 법정수탁사무로서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

9) 지방재정과의 연계성 모호

- 사무구분 체계에서 문제점 중 하나는 <표 2-6>과 같이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경비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국가가 전액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자 등에 대한 보조 등 극히 제한적임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사무의 위임경향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으로 지방의 고유 사무 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함

<표 2-6> 사무 구분에 따른 경비부담의 원칙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경비부담	자치단체 부담 (국고보조 가능) (지방재정법 제17조)	국가 부담 (일부 또는 전부)	전액 국가 부담 (지방재정법 제18조)
자치입법	의회·행정입법 - 조례, 규칙	의회·행정입법 - 조례, 규칙	행정입법(의회입법불가) 규칙, 조례 불가
행정적관여 (감독)	소극적 관여 (적법성·사후적관여)	소극적 관여 (적법성·합목적성·사후적 관여)	적극적·소극적 관여(적법성·합목적성·사전·사후적 관여) (지방자치법 제156조)
지방의회 관여	가능	지방의회와 의결, 동의, 사무감독, 회계감사 등 대부분 가능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부분담에 관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자료: 임승빈, 2008: 180

제2절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의 예시

1) 예시 의미

-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의 사무로 6대 분야 57개 종목을 예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제시된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포함되어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또는 계층별 사무의 구별을 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예로 들은 것이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실제로 더 있을 수 있음
- 넷째, 여기에 예시된 모든 사무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사무도 있을 수 있음

2) 예시된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가 6대 분야 57개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음
- 그러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본문에서 예시한 사무들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안 될 수도 있게 하고 있음

<표 2-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범위	세부 사무	
구역, 조직 및 행정 등에 관한 사무 (11)	가.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 명칭·위치, 구역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의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 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시 및 통계의 작성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 (10)	가.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근공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부녀보호와 복지 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수산업 등 농업에 관한 사무 (14)	가. 소유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포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 사업 자. 가축 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 및 주민 생활 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15)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도복·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 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개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5)	가.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 예방 및 소방

자료: 안용식의, 2006: 408

2.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문제점

1) 법조문의 추상성

- 「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한 예시적 사무(57개 사무 예시)가 시·도의 사무인지 시·군·구의 사무인지 아니면 공동사무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고, 특히 자치사무만을 예시한 것인지 기관위임사무를 포괄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음(이용환외, 2009)
- 현행 중앙과 지방간 사무구분의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법(제8조~제11조)에 규정된 사무배분의 원칙과 사무예시 등이 추상적이어서 개별법 제·개정 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임
- 또한 사무예시 관련조항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선언적 규정으로 직접적 구속력을 확보하는데 미흡함

2) 분류의 포괄성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 예시주의방식에 따라 6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예시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57개로 분류하고 있음
- 이러한 분류는 지방재정상의 경비분류(기능별 분류)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무 경비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분류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가 이 범주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무가 해당하지 않는지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
- 이 때문에 사무구분 및 배분이 상당부분 사무구분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행정관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3) 자치사무배분예시의 유명무실화

- 자치사무의 국가사무화로서 지방자치법(제9조)에는 57종의 자치사무가 예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제8조)에는 단위사무 641개(광역 301개, 기초 340개)가 열거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규정 및 시행령 제8조의 단서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시의 실익이 상실되고 있음
- 즉,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개별 행정작용법은 총726개가 있으며, 시행령 제8조의 단서조항인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까지 합치면 무려 1,452개에 달함
- 이러한 법령들로 인해 자치사무 배분에 관한 예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된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화된 사무는 37개(기관위임사무포함)가 있음. 아울러 시·도 사무로 예시된 사무 중 6개 사무는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 사무로 예시사무 중 2개 사무는 시·도 사무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변경되어졌음

4) 개별법률 규정의 판단에 따른 사무구분(규정방식의 가이드라인)

- 제2항의 규정방식은 이른바 예시적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6개 분야, 57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 법률에 따른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동항 각호의 사무가 바로 자치사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것이 없더라도 동항에 열거된 것만으로는 사무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항의 규정은 자치사무의 범주를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임

- 결국 지방자치법 제9조는 자치사무의 확충에 관한 정부(좁게 말하면 행정안전부)의 희망사항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무구분은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무는 이른바 준립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행정주체로서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마련하며 필요한 재정적, 인적 수단을 갖추기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고 함
 - 따라서 이 사무는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사무 배분에 있어 양자 모두에 배분되어야 할 사무임이다(제10조 제1항 단서 참조)

5) 예시기준 규정방식의 모호성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경우를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들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나타난 자치사무 전체의 정의로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흡사하고 같은 호, 각목에서 이를 다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서도 매우 포괄적인 사무들을 언급하고 있음
- 이처럼 동항 전체의 규정방식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이를 기준으로 특정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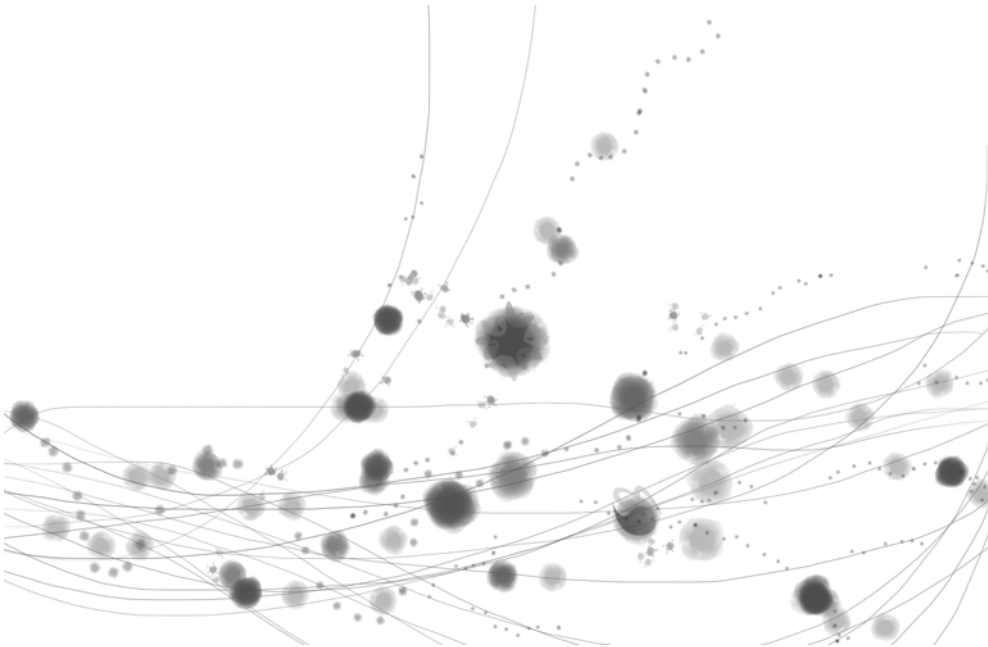
제 3 장

일본의 광역·기초 예시 사무 사례분석

제1절 국가 및 지방사무의 역할 분담

제2절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제3절 시사점



제3장

일본의 광역·기초 예시 사무 사례분석

제1절 국가 및 지방사무의 역할 분담

1. 개관

- 일본 정부는 2000년 4월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되어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의 명확화, 기관 위임 사무 제도의 폐지, 국가의 관여 규칙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지역 실정에 따라 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일본이 채택한 새로운 사무구분 방식은 <표 3-1>과 같음. 즉,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의 재정의임

<표 3-1> 일본의 새로운 사무구분 체계

구분	구 사무구분	개정된 사무구분(법령 근거)
국가 사무	법령상 국가사무로 규정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하여 규정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사무, 민간활동 및 지방 자치에 관한 전국적 준칙사무, 전국적 규모나 전국적 관점에서 행해야 하는 시책, 사업 등 주로 3 분야에 한정(신 지방자치법 제1조의2의 2항)
자치 사무	- 포괄적 의미의 '지역의 사무' (공공사무 + 행정사무), 과거의 단체위임사무	- 2가지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지역의 사무'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사무'(일본지방자치법 제2조2항) - 이 중에서 법정수탁사무를 제외한 사무(동법 제2조 8항)
위임 사무	- 기관위임사무 존재: 구 지방자치법 별표3과 별표4에 도도부현 단계, 시정촌 단계의 기관에 위임되는 561항목의 기관위임사무를 열거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자치법 별표 561항목 전면 폐지) - 법정수탁사무로 전환(신 지방자치법 제2조 제10항에서 각각제1호 법정수탁사무, 제2호 법정수탁사무를 열거, 또한 정령에 근거한 법정수탁사무에 대해서 시행령에 열거

- 또한 현재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지역주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자치행정기관에서는 지역주권형 사회에 걸맞은 지방 자치 제도의 기획 입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총무 대신을 최고로 한 “지방재무행정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주권의 확립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널리 담당하며(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한다) § 1-2 ①), 지역의 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기타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법 § 2 ②)
 - 이러한 사무 처리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역할 분담의 원칙을 결정하고, 국가는 이것을 기본으로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 1-2 ②)
 - 국가사무 : 국가는 국가가 본래 완수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국가가 본래 완수해야 할 역할로 세 유형을 예시)

- ①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무
- ②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활동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준칙에 관한 사무
- ③ 전국적인 규모 또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시책 및 사업의 실시)

· 지방사무 : 주민과 밀접한 행정은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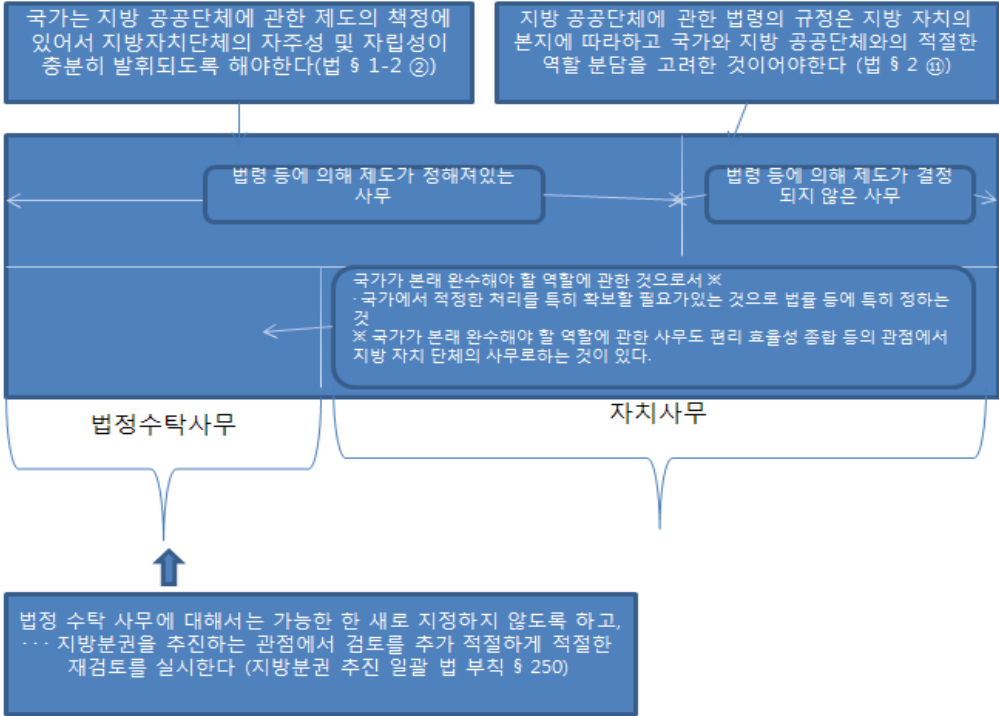
-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역할 분담
 - 도도부현의 역할은 ① 광역에 걸친 것, ② 시정촌에 관한 연락 조정에 관한 것, ③ 그 규모 또는 성질에 있어서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법 § 2 ⑤)

-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사무와 법령에 정해진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법 § 2 ②)
- 또한, 국가는 지방 공공단체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법 § 1-2 ②)
- 그리고 이러한 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제도와 시책 및 운영의 근간이 법률 등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① 국가가 지방 공공단체에 관한 제도의 기획 입안을 할 때 입법 기준으로, 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사무 처리시 법령의 해석 운용 기준이 되며, 국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단계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제도적 기획 입안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 기준을 정하고 있음([그림 3-1] 참조)
 - 하나는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법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제도를 기획하고자하는 경우,
 - 다른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에 의해 처리할 사무 등을 법률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법정수탁사무)임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기준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는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기준안에서 관여를 하여야 함(〈표 3-2〉 참조)
- 단, 관여의 경우에도 국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관여를 받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배려 해야 함(법 § 245-3 ①)

<표 3-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기본 원칙

구분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
조언·권고	○	○
자료제출 요구	○	○
시정요구	○	
동의	※	○
허가인가승인	※	○
지시	※	○(시정지시)
대집행	□	○
협의	※	※
기타 관여	□	□

주 1 : 음영 표시는 지방자치법에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주 2 : ※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예를 들어 "협의"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시책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없도록해야 함(법 § 245-3 ③)

주 3 □ :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국가는 가능한 한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아래의 사항처럼 참여를 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법 § 245-3 ②)

① 자치 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대집행" "기타 관련"

② 법정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기타 관련"

3. 사무의 집행단계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에 관한 법령이나 시책을 해석 및 운영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아래의 규정안에서 해야 함
- 또한 관여를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으로 준용해야 함
- 즉, 국가는 본래 완수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를 담당 하여함

- 법정수탁사무의 경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되는 사무가 자치 사무인 경우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해야 함(법 § 2 ⑬)
-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이를 해석하고 운용하도록 해야 함(법 § 2 ⑫)

제2절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1. 자치사무

- 일본의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사무 중 법정 수탁 사무를 제외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는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사무 처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개호 보험 서비스, 국민 건강 보험 혜택,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임
 - 다른 하나는 법률 및 시행령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실시하는 사무로서 각종 보조금 등 (영유아 의료비 보조 등)의 교부, 공공 시설 (문화 홀, 평생 학습 센터, 스포츠 센터 등) 관리 등임
- 또한 국가의 관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 요구까지 가능함

- 그 결과 자치사무의 구분과 범위가 더 명료해져 용이하게 사무배분을 추진할 수 있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새로운 규칙의 제정, 새로운 국가의 관여방식 체계화, 필치규제의 재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위임사무의 폐지와 자치사무로의 전환은 일본은 구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위임사무 예시 항목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표 4: 새로운 위임사무 근거 참조), 기관위임사무제도와 관련한 규정도 삭제하였음
 - 주무대신, 도도부현 지사의 지휘감독권(구 지방자치법 제150조), 시정촌장이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사무에 관련되는 도도부현 지사의 취소, 정지권(구법 제2152조1항), 장에 대한 직무집행명령(구법 제151조의 2), 기관위임사무를 열거한 별표 및 그 근거규정(구법 제148조 2항, 3항, 제180조의8의 2항, 제180조의9의 3항, 제186조 3항, 제202조의 2의 제6항 및 별표 제3 및 제4) 등이 그 대상임
- 전체 561항목 중 6할을 자치사무화 하였고, 약 4할을 법정수탁사무화 하였음. 특히 복지, 교육, 토지이용 등 자주적인 기능들을 자치사무화 하였음
 - 자치사무화 하는 과정에서 각 사무를 구분하여 ①이 기회에 폐지해 버려도 괜찮은 것: 사무자체의 폐지(11항목), ②대부분의 것은 자치사무로 이행시킬 것: 자치사무로의 이행(398항목), ③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국가의 이해에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법정수탁사무로 바꿀 것: 법정수탁사무로의 이행(275항목), ④매우 예외적일 수 있는 것으로 국가에 반환해서 일관적으로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 국가의 직접 집행사무(20항목) 등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자치사무화를 추진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였음(윤재선, 2006; 오재일 역, 2005; 채원호 역, 2004)

2. 법정수탁사무

- 국가(또는 도도부현)가 본래 완수해야 할 역할에 관한 사무로서, 국가(도도부현)에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의미함
- 반드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사무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무로서 국정 선거, 여권 발급 국가 지정 통계, 국도의 관리, 호적 사무, 생활 보호 등임
- 또한 시정 지시, 대집행 등의 국가의 관여가 강하게 인정되는 사무임
 -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제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호 법령수탁사무
 - 소방법시행규정 제2조, 6조, 7조
 - 공유수면매립시행령 제1조1항, 제2항, 제6조 등
 - 보건보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 인구동태조사령 제3조, 제5조
 - 화재구조법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2항제2호, 제3호 등
 - 농업화재보상법시행령 제9조 등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조제2항 등
 - 최고재판소재판관국민심사법시행령
 ==> 총 138개의 시행령 관련 사무
 - 제2호 법정수탁사무
 - 모건보호법시행령 제7조 등
 - 어업법시행령
 - 신체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4조, 제8조제1항 등
 - 공직선거법시행령
 - 정신보건및정신장애자복지와관련한법시행령 제5조 등
 - 토지수용법시행령 등
 ==> 총 21개의 시행령 관련 사무

3. 자치단체별 자치사무

- 도도부현의 주요 자치사무는 아래와 같음
 - 지정 구간의 1 급 하천, 2 급 하천 관리
 - 초등학교에 관한 학급 편성, 교직원 상수 결정
 - 사립 학교, 시장 존립 학교 설치 허용
 - 고등학교의 설치 관리
 - 경찰 (범죄 수사, 운전 면허 등)
 - 도시 계획 구역의 지정 등
 - 시가 화 구역, 시가 화 조정 구역의 지역 구분 등
- 시정촌의 주요사무는 아래와 같음
 - 일본어생활 보호 (시 및 복지 사무소 설치 정촌 처리)
 - 특별 양호 노인 홈의 설치 운영
 - 개호 보험 사업
 - 국민 건강 보험 사업
 - 도시 계획 결정
 - 시정촌 도로, 교량 건설 관리
 - 상하수도 정비 관리 운영
 - 초중 학교의 설치 관리
 - 일반 폐기물 수집 및 처리
 - 소방 구급 활동
 - 주민 표와 호적 사무 등
- 시와 정촌의 요건 및 사무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요건
 - 시 : 인구 5 만명 이상이며, 당해시의 중심 시가지를 형성하고있는 지역에있는 호수가 전체 호수의 60 % 이상 또는 상공업 기타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자와 동일 세대에 속

하는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의 60 % 이상, 그리고 이상의 다른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적인 시설 기타 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 정 :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여부

⇒ 시가지 요구 사항, 상공업 종사자 요구 사항 등을 규정하고있는 예가 많음(법 § 8 ②)

- 촌 : 없음

- 사무

① 생활보호

- 시의 경우 복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생활 보호법에 따라 보호 결정 등의 업무를 함(사회복지법 제14조, 생활보호법 제19조)
- 정촌의 경우 복지 사무소를 설치하는 생활 보호법에 따라 보호 결정 등의 업무를 함

② 도시계획

- 시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도시 계획 결정의 사무를 실시함(도시계획법 제5조)
- 정촌의 경우 도지사가 도시 계획 구역을 지정, 해당 지역 내에서 도시 계획 결정의 사무를 실시함

○ 지정도시

- 아동 상담소의 설치
- 시가지 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 계획 결정
- 시내 지정 구간 밖의 국도 및 지방 도로 관리
- 현비 부담 교직원의 임면, 급여 결정 등

○ 중핵시

- 특별 양호 노인 홈의 설치 허가 감독
- 신체 장애인 수첩의 교부
- 보건소 설치가하는 사무

-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음식점 영업 등의 허가, 온천의 이용 허가
 - 옥외 광고물 조례에 의한 설치 제한
 -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허가 등
- 특례시
- 시가 화 구역 또는 시가화 조정 구역의 개발 행위의 허가
 - 도시 개발 사업 지역 내에서 건축 허가
 - 소음을 규제 지역 지정, 규제 기준 설정 등

제3절 시사점

- 일본의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은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모두 조례 제정권을 보장하게 되었음. 이는 일본 헌법 제94조의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하는 점을 보장한 것임
- 둘째, 위임사무의 폐지로 인하여 중앙(국가)-도도부현-시정촌의 정부간 관계가 좀 더 수평적으로 변화하여 사전의 권력적 관여가 축소됨. 결국 중앙-지방간 사전협의 절차가 신설되는 등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기회로 작용하여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이관된다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계획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권한은 일정하게 존속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예시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반해 일본의 경우 법상에 예시하고 있는 사무는 법정수탁

임.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권 측면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음

-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9조가 예시하고 있는 사무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포함되어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예로 들어 보여준 것이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실제로 더 있을 수 있는 것임
 -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예시한 법정수탁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2 보통 지방 공공단체는 지역의 사무 및 기타 업무에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처리하게 되는 것을 처리함
 - 3 시정촌은 기초적인 지방 공공단체로서 다섯 번째 항에서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여야함
 - 4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항목에 규정하는 사무 중 그 규모 또는 성질에 있어서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촌의 규모 및 능력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음
 - 5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의 지방 공공단체로서 제 2 항의 업무에서 광역에 걸친 것, 도시에 관한 연락 조정에 관한 것 및 그 규모 또는 성질에 있어서 일반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인정되는 것을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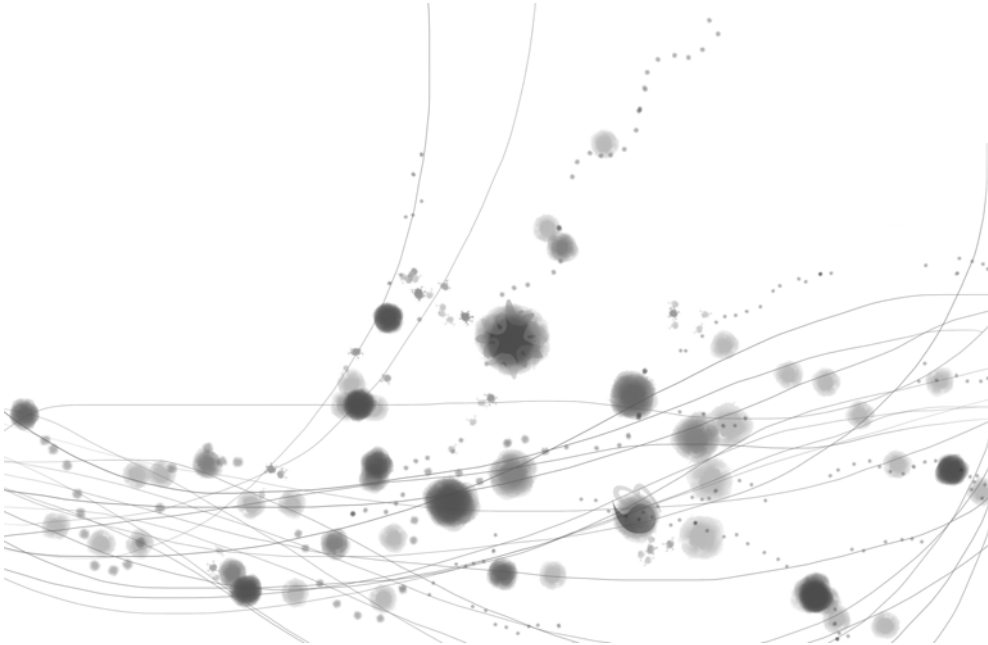
제 4 장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예시사무 개편방안

제1절 현행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개관

제2절 현행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체계의 한계

제3절 광역·기초 예시사무 개선방안



제 4 장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예시 사무 개편방안

제1절 현행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개관

1. 법 규정

- 직접관련 규정(Direct connected regulations)
 - 특정 사무가 광역에 속하는지 기초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데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동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간접관련 규정(Indirect connected regulations)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를 통해 특정 사무가 광역사무인지 기초사무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그 구분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
 - 이른바 이들 ‘간접규정’은 특정 사무가 광역과 기초간 그 관할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法院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준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표 4-1> 광역·기초간 사무구분을 위한 간접규정

조 문	규 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148조(지방자치 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중 양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제167조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광역·기초간 사무의 판정

○ 행정실무상 광역·기초간 사무관할의 판단절차

-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간 사무배분 방식내지 특정 사무에 관한 관할권 판단은 다음 표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표 4-2> 특정사무에 대한 광역·기초간 관할권 판단 절차

절차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무 ↓	
① 사무배분의 기준에 관한 원칙검토 ↓	≡ 지방자치법 제8조
②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인지에 대한 판단 ↓	≡ 동법 제9조
③ 광역사무인지 기초사무인지에 대한 원칙 확인 ↓	≡ 동법 제10조
④ 광역 혹은 기초에 속하는 사무인지 여부 판단 ↓	≡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보충성의 원칙 등 적용: 동법 제10조 3항, 제8조 3항 등 간접규정 준용)
④-1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속하는 사무인지 판단 병행 ↓	≡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
광역 혹은 기초 관할권 확정	

제2절 현행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체계의 한계

1. 직접관련 규정의 무용론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기능적 한계
 - 동법 제9조에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를 규정해 두고 있음
 - 동법 제9조 1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를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2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라는 의미에서 “법정지방사무”라고도 함¹⁾

- 이와 관련, 견해가 나뉘는 바, 일설은 이를 단체위임사무라 보고있고, 다른 견해는,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하는 법규정에는 단체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도 포함된다고 함
- 그래서 동법 제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부적절함²⁾
- 이는 현행 법령상 단체위임사무의 실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³⁾을 고려한다면, 동법 제9조 1항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기본적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동법 제9조 1항이 지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종류에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라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그 제2항에서 예시적으로 규정된 사무는 이들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처리하는 共同事務와 이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하나 사무의 성격이 같은(예: 국가의 국립경기장 관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시립 및 도립 그리고 시·군립의 경기장 관리)⁴⁾ 共通事務도 포함된다⁵⁾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법 제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종류를 망라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광역과 기초간 사무 관할을 파악하는데 실익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은 타당할 것임

1) 임승빈(연구책임),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8. 9), viii면

2) 이기우, 주석 지방자치법(김철용 집필대표), 한국사법행정학회(1997), § 9, 71면

3) 홍정선, 신지방자치법(2009), 476면. 현재 국가사무의 위임은 거의 대부분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이다(477면)

4) 홍정선, 신지방자치법(2009), 490면

5)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 단서는 이를 증명해 준다.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조의 한계
 - 동법 제10조 1항 1호의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가호부터 바호까지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규모면이나 예산, 지역적 범위, (광역적)동일성과 통일성, 공동시설 등은 광역이 처리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은 사무의 특성 내지 속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실제 개별법상의 특정사무에 동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광역인지 기초사무인지를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주요 선진국에서도 同條와 같은 규정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 지방행정 실무상 특정사무가 광역사무인지 기초사무인지의 판단기준은 많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이 되고있음
 -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0조와 개별법상의 광역 혹은 기초에 배분되는 사무에 관한 규정간에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임

2. 개별법과의 불일치

- 청소년기본법 제14조
 -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 “연도별 시행계획”은 본 조문만으로 볼 때,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도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럼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라. 목 18호(“청소년 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는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개별법과의 불일치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별표2를 개별

법 조문과 일치시켜야 함

3. 공통사무의 증가

-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는 공통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례가 증가함
 - － 예를 들어, 금연구역의 지정과 같이, 광역과 기초단체는 각각 조례를 제정함으로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3항, 동법 제10조 3항과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음
 - － 이들 사무는 대부분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바, 광역이나 기초 둘 중 한 쪽만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광역-기초간 사무갈등을 예방하여야 할 것임
 - － 이때, 그 사무가 현지성과 지방자치법 제8조 3항, 동법 제10조 3항을 기준으로 할 때 기초에게 적합하다 판단되는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한편,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광역과 기초가 앞다투어 제정함으로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4. 현지성과 통합성의 부재

- 동법 제10조 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에 있어 사무의 현지성 및 통합성 부재로 광역·기초간 사무구분 갈등 양산
 - － 기본적으로 특정 사무가 주민밀착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초가 처리하게 함이 바람직함에도 사무의 일정부분을 광역에게 “계획수립” 혹은 “...의 지정” 등의 형식으로 광역과 기초간 중첩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광역-기초간 사무구분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따라서 현지성이 있는 사무는 기초가 맡게하고 광역은 주로 '지원' 및 '후원' 등의 일을 일임하고, 당해 사무의 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시행까지도 기초가 맡게 함으로 갈등을 방지할 것이 요구됨

제3절 광역·기초 예시사무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개정

- 동법 제9조 2항은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의 기준이나, 동법 제10조 1, 2항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기능적 의의가 없으므로 개정함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동법 제9조 2항에 예시된 사무는 아무런 존재 의의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현지성 및 통합성의 준수

- 동법 제10조 2항 및 시행령 제8조를 현지성과 통합성에 따라 정비
 - 주민밀착형 사무는 기초가 담당
 - '계획'과 '시행'을 통합하여 광역 또는 기초 중 한쪽으로 정리하여 갈등 예방
 - 다음 표와 같은 기준 및 예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를 정비

구분	광역 사무	기초 사무
기준	현지성이 강한 사무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원	현지성이 강한 사무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시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 지원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 지원

3) 지방자치법 사무배분규정의 개별법과의 일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와 개별법의 일치 시도
 - 광역지방의 사무전담 공무원의 협조를 통해 불일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임

4) 관할갈등의 해소

- 광역-기초간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리함
 -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규정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광역-기초간, 혹은 국가-지방간 사무의 관할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함

5) 공통사무에 대한 조율 규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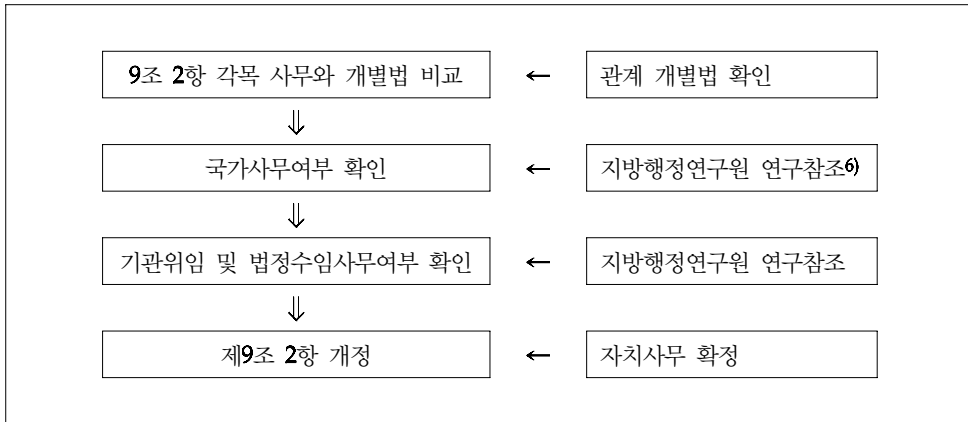
- 광역-기초간 자치사무에 대한 조율 시도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3항, 동법 제10조 3항을 묶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1개 규정을 동법 제8조 3항과 대체할 수 있을 것임

2.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1) 지방자치법 개정안(제9조 제2항)

- 개정의 기준 및 절차
 - 상기 “1.기본방향”에서 언급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절차는 다음 [그림 4-1]에 따름

[그림 4-1] 제9조 2항 개정절차



- 동법 제9조 2항의 신·구 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 상기 과정을 거쳐 개정된 사항을 다음 <표 4-3>과 같이 정리함
 - 이때, 국가 - 광역 - 기초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도 수행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자치사무에 포함시킴(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기본법 제34조)

6) <http://samu.krila.re.kr>

〈표 4-3〉 제9조 2항 신·구 대조표

구분	현행	개정안 ⁷⁾
제9조	<p>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2. 법정수임사무(法定受任事務): 다음 각 목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령에 의한 법정수임사무: 국가사무이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가 수임한 사무 나. 조례에 의한 법정수임사무: 시·도의 사무이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조례에 따라 관할 시·군 및 자치구가 수임한 사무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⁸⁾ 및 주민등록⁹⁾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¹⁰⁾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p>② 자치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u>관할 내의</u>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u>주민등록 관리</u> 카. <u>자치사무 수행에</u>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p>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p> <p>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p> <p>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p> <p>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¹³⁾</p> <p>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p> <p>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p> <p>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p>	<p>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p> <p>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u>농지¹¹⁾·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¹²⁾</u>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u>공유림 관리¹³⁾</u></p> <p>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p> <p>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p> <p>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p>
---	--

	<p>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p> <p>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p> <p>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p> <p>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p> <p>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p> <p>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p> <p>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p>	<p>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p> <p>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p> <p>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p> <p>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p> <p>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p>
	<p>신설</p>	<p>③ 법령에 의한 법정수임사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된다.</p>
	<p>신설</p>	<p>④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법정수임사무로 정한 사무 외의 사무는 자치사무로 본다.</p>
	<p>신설</p>	<p>⑤ 이 법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p>
<p>제10조</p>	<p>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p> <p>1. 시·도</p> <p>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p>	

	<p>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p> <p>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p> <p>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p> <p>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p> <p>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p> <p>2. 시·군 및 자치구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p>	

7) 2011. 7.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작성함

8) <그림 1>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살핀 결과, 앞의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본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임이 확인됨. 따라서 여기서 삭제함

참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9) 주민등록 관리 사무는 주민등록법 제2조 1항에 따라 자치사무로 판정됨에 따라 여기서 존치시킴

10)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함

11) <별표 1>의 해당 부분과의 일치를 위해 ‘늘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농업용수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사무로 확인되고 있음

13) 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법제처 홈페이지 및 <http://samu.krila.re.kr>에서 “공유림” 검색 불가

1) 동법 시행령 개정안

(1) 시행령 제8조

제8조(지5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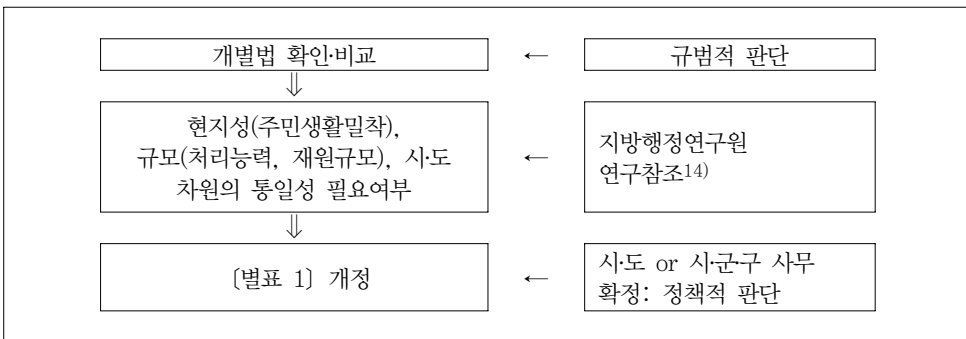
○ 개정의 기준

- 상기 “1. 기본방향” 에서 언급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특히 ①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밀착형사무는 기초로 일괄정리하고, ②광역-기초간 사무수행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사사무를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 한쪽에서만 처리하도록 함

○ 개정의 절차

- 절차는 다음 [그림 4-2]에 따름

[그림 4-2] <별표 1> 의 개정절차



○ 예시

- 이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류한 예를 들면 다음의 <표 4-4> 와 같음

14) <http://samu.krila.re.kr>

〈표 4-4〉 개정기준 예시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별표 1〉개정(안)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 2) 주민서비스 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점검평가, 홍보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5)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2)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3) 사회복지법인 설립,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 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4)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제보호비 지급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영 10)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11)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p>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지원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 3)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지원 4) 아동복지시설의 지원 5)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지원 6) 장애인의 고용 촉진·지원 7)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원 8)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지원 9) 청소년시설의 설치·지원 10)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도 단위) 11)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원 12) 청소년의 달 행사 계획·지원 13)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 14)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지원 15)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16)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지원 17)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지원 18) 여성단체 육성·지원 19) 여성복지시설의 설치·지원 20)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및 직업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2)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4) 아동복지사업계획의 시행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0)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1)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의 시행 12) 장애인의 파악·관리 13)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4) 장애인의 고용 촉진 15)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16)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7)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 18)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19) 불우청소년보호 20) 청소년시설의 운영 21)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 22)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3)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5)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26)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시행 27) 여성복지시설의 운영 28)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시행 29)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30)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 32)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3) 여성단체 육성·지원 34)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5)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실시
<p>마. 국민건강증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 시행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 및 수행
<p>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운영비의 지원 6)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소 및 지소의 운영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p>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지원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계도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대응시설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p>아.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 허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5) 시체운반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 2)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3)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4)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5) 무연분묘의 정리 6) 분묘의 개장명령 7)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p>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시행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p>차.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다) 4)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3)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4)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5)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6)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7)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8)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9)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0)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1)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2)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3)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4)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설치·유지 관리
<p>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지원 	

	6)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7)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¹⁵⁾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수립·추진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2)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3)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5) 농업용 지표수,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농업, 생활용수 수질관리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조정·지원 4)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공급 5)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7)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지원 8)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2) 관정·양수장비 확보·관리 3)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4)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운영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지원 9) 관영도축장 운영관리 10)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다. 농업자재의 관리	1)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연구개발 2)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2) 복합영농 시범사업 융자금 관리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2) 복합영농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3)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4) 면 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성 및 마을단위 복합영농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 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p>마.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p>	<p>1)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수립</p>	<p>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p>
<p>바. <u>공유림관리</u>¹⁶⁾</p>	<p>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특수조림지 관리 3)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p>	<p>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 명령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 신고 수리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4) 산불예방, 도·남별 단속 등 산림 보호 5) 산림병충해 방제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 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1) 부정입산물 단속 등 입산물 반출·반입 통제</p>
<p>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p>	<p>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계획 수립·조정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수립·조정·지원 4) 종축장 운영 5) 보호 종축의 지정 6) 가축 개량·증식·보호</p>	<p>1)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2) 초지조성 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진 3) 추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4) 가축개량·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p>
<p>아. 가축전염병 예방</p>	<p>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지원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p>	<p>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p>
<p>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p>	<p>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해소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의 지원</p>	<p>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p>

<p>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2) 소비자 계몽 및 교육 지원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4)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5)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소 비자 계몽과 교육관리 3) 소비자 계몽과 교육 4) 소비자 상담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5)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p>카. 중소기업의 육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립 2)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3)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4)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5)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 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4)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5) 중소기업 육성보조금의 지급 6)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p>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지원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지지원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지원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시행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지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p>파.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 광민예품 개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작성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 수립·시행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3)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 4) 토산품 전시관 운영 5)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6) 토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보호
<p>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개발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지원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3)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4)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5)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시행 2)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지도·시행 4)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5)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6)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7) 도시 새마을 운동 추진 8)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9)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p>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시·도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5) 무허가건축물 단속
<p>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광역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광역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광역시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광역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광역시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광역시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군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군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시·군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군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 조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시·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시·군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시·군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p>라.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관리계획 수립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6)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7)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8)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도관리계획 시행 2) 시·군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시·군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시·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p>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지원 2)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지원 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지원 4)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5)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수립·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광고물 시범개선사업 10)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1)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p>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 구조개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조정·지도 2) 농어촌주택개량 용자금 감독 3)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4) 농어촌주택표준 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시행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3) 농어촌주택단지 조성 4) 농어촌주택개량 용자금 관리
<p>사. 자연보호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환경보전 계획 수립 2) 자연환경 개선사업 지원 3)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4)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5)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6)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관리 7)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환경보전 세부시행계획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 5)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7)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8) 자연보호 지도·계몽 9)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p>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2) 하천예정지의 지정 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4)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7)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 정비계획 시행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 선정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지구 측량·설계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만 편성·운영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등 유지·관리 6) 하천감시(사리채취단속 등)
<p>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군·자치구의 통합계획 수립만 해당된다)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p>차.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1) 간이상수도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p>	<p>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시행 2) 간이상수도사업장 선정 3) 간이상수도공사의 지도 4) 간이상수도의 위생 및 수질 관리 5) 간이상수도의 폐쇄 결정</p>
<p>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녹지의 설치 및 관리 9)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관광자원 개발·보존 1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계획 수립·개발·시행 12) 관광휴양지의 관리 13) 유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p>
<p>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p>	<p>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5)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p>	
<p>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1)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지도 및 지원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p>	<p>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 3) 가로등의 유지·관리</p>
<p>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p>	<p>1)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p>	<p>1) 시·군·자치구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군·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수방단(水防團)의 조직·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p>

	<p>7)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p>	<p>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치·운영 10)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체계 수립·운영</p>
<p>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p>	<p>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7)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 정보의 제공 8)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9)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10)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1)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13)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4) 도매센터 개설허가 15) 연쇄화 사업자 지정 16)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p>	<p>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시행 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 3)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4) 농공지구의 조성·분양 및 관리 5)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 및 그 사업계획 승인 6)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7)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 8)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9) 시장 개설허가 10) 시장관리자 지정</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p>	<p>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p>	<p>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추진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p>
<p>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p>	<p>1)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2)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p>

<p>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3)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지원</p>	<p>3)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4)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p>
<p>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p> <p>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p> <p>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p>	<p>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 5)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p> <p>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지원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p> <p>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지원 2)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p>	<p>1)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2)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p> <p>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p> <p>1)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p>
<p>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p>	<p>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 홍보에 관한 사항</p>	<p>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 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7)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8) 시민민방위대 육성 9) 민방위대 교육훈련</p>

나. 화재예방 및 소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	---	--

(2) 시행령 제9조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의 기준

- 앞의 “〔별표 1〕 개정(안)”에서 道를 제외하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처리하는 사무와 일치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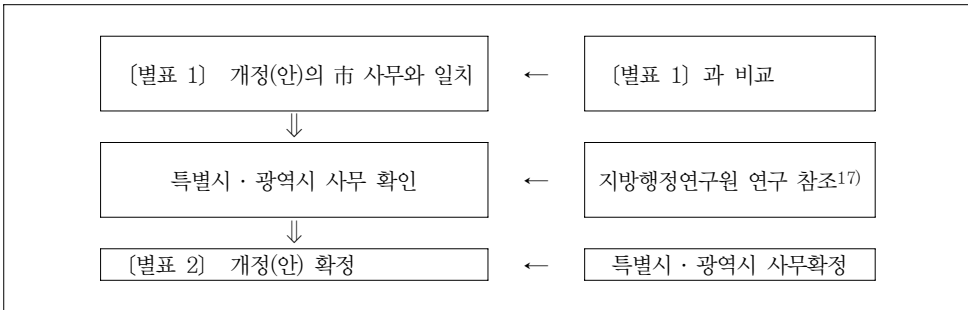
○ 개정의 절차

- 절차는 다음 [그림 4-3]에 따름

15) 위의 각주 12 참조: 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농업용수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사무로 확인되고 있음

16) 위의 각주 13 참조: 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법제처 홈페이지 및 <http://samu.krila.re.kr>에서 “공유림” 검색 불가

[그림 4-3]〈별표 2〉의 개정절차



〈별표 2〉 개정(안)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9조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
4. 청소·오물에 관한 사무
 - 가.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5.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6.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나.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 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 라.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입안
 - 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7) <http://samu.krila.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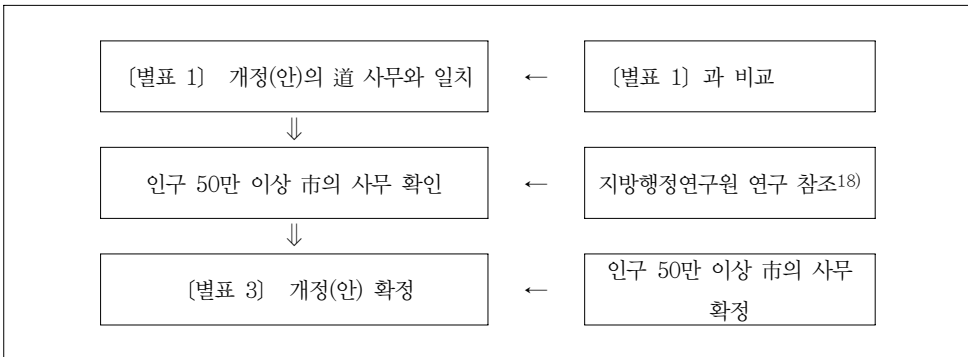
- 사.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주택개발재개발사업은 제외)
7.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중로(12미터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 가.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 나. 상수도 공채 발행
 -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 라.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 가.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10.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 나.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 다. 도시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 마.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궐도사업에 관한 사무
 - 가. 지방궐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 나. 지방궐도사업의 설치·운영
 - 다. 지방궐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 가.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영에 관한 사무
 - 나.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 나.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 삭제 <2008.10.8>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8>

- 개정의 기준
 - 앞의 “ [별표 1] 개정(안)” 에서 道 사무와 일치시킴
- 개정의 절차
 - 절차는 다음 [그림 4-4]에 따름

[그림 4-4] <별표 3> 의 개정절차



18) <http://samu.krila.re.kr>

〈별표 3〉 개정(안)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 관련)

1.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2.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 가.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 나. 지방공단 설립·운영
3.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 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 나.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5.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 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 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다.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 라.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 마.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6.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 나.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7.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나.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 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 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 마.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 바.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8.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 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 나.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9.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 가.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 나.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계획변경인가
10.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11. 지적에 관한 사무
 - 가. 토지의 지번경정승인
 - 나.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 다. 축척변경승인
 - 라. 지적측량검사
 - 마.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12. 열 사용 기자재에 관한 사무
 -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13.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업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 가. 허가·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 나. 시설의 개수명령
 - 다. 폐기처분
 - 라. 허가취소
14.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가.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 나.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의 허가
 - 다. 시체운반업의 허가
15.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 수납의 승인
16. 고압가스에 관한 사무
 -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17.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8.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